**[출처]** 주택도시기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
**[링크]** 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1101.jsp

**[상품명]**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
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.

**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.**

**[대출대상]**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

**[대출금리]** 연 0%(5천만원 한도), 1.2~1.8%(5천만원 초과)

**[대출한도]** (공공임대주택)보증금 50만원, (민간임대주택) 보증금 8천만원

**[대출기간]** (공공임대주택)2년 (최장 20년 이용 가능)  
(민간임대주택)2년 (최장 10년 이용 가능)

**[대출안내(공공)]**

**1. 대출 대상**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* +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  + (세대주)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(주거상향 유형 확인서)인 세대주
    - ※ 비정상거처 거주자(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)
      * 1.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 등
      * 2.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
  +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**2. 신청시기**

*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*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 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

*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

 신청 방법 :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,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

 □ 보증 신청 기한

* +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
    - 임대차 계약 신규 : “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” 이내
    - 임대차 계약 갱신 : “갱신 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(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” 이내
  + HF 전세자금보증
    - 임대차 계약 신규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    - 임대차 계약 갱신 :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(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),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  ※  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

**3. 대상주택**

*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

**4. 대출한도**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* 1. 호당대출한도 50만원
* 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  +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 또는 100% 이내
  +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% 이내 또는 100% 이내

※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,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3. 담보별 대출한도
  +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  +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※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5. 대출금리**

* 무이자

**6. 이용기간**

2년. 단,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(최장 20년 가능)

*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최장 20년 10개월 가능)

**7. 상환방법**

* 일시상환

**8. 담보취득**

* 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* 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* 3.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  +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
  + ※채권양도협약기관(2022.12 기준)
    - LH, SH, 경기도시공사, 부산도시공사, 전북개발공사, 공공임대리츠 1~16호, 국민행복주택리츠 1~2호, 청년희망리츠
* 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

**9. 고객부담비용**

*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*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
**10. 대출금지급방식**

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
*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
**11. 대출취급영업점**

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
* 단, 특별시,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, 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,군까지 취급

**12. 중도상환수수료**

* 없음

**13. 대출계약 철회**

*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  + 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  + 2) 대출계약체결일
  + 3) 대출실행일
  + - 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
**14. 유의사항**

*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*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
* 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* 비주택거주자(비정상거처)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“보증금”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*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(다만,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)
*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(점검 대상 : 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, 결혼예정 배우자,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
**15. 상담문의**

*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 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*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-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.

**[기한연장(공공)]**

**1. 대출 대상**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* 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
*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*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**2. 대출금리**

* 무이자

**3. 상환방법**

* 상환방법 변경불가

**4. 유의사항**

*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
*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

**5. 상담문의**

*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**[추가대출(공공)]**

**1. 대출대상**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* 1.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
  +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(전입일 기준)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
* 2. 임차보증금이 증액 (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)하는 경우

**2. 대출한도**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* 1. 호당대출한도
  + 50만원 이하
* 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  +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% 이내
* 3. 담보별 대출한도
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
③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추가대출 불가

**3. 유의사항**

*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

**4. 상담문의**

*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**[이용절차 및 제출서류(공공)]**

**1. 대출신청**

* (은행 방문 신청)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은행에서 가능

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**2. 이용절차**

1. **대출조건 확인:**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
2. **대출신청:** 은행 방문 신청 (주거상향 유형 확인서)
3. **대출실행:**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

**3. 준비 서류**

**《필수 서류》**

*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* 대상자확인 : 주민등록등본 등
* 주택관련 :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 등
* 기타확인 :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\*  
  \*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
*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
**《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》**

* 대상자확인
  +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
  +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증명원
  +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*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  + (근로소득)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  + (사업소득) 사업자등록증
  +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* 주택관련 :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* 기타확인 :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 등

**4. 상담문의**

*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**[대출안내(민간)]**

**1. 대출 대상[민간임대]**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* 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* 2. (세대주)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(주거상향 유형 확인서)인 세대주
  + ※ 비정상거처 거주자(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)
    - 1.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 등
    - 2.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
*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* 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  + 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  + (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)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  + (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* 5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
  +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의 확인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
* 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  + 2025년도 기준 3.37억원

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[바로가기](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8/FP0813/FP081301.jsp))

* 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+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
    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 
    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  
    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  +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* 8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  +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(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

**2. 신청시기**

*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*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 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

*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

 신청 방법 :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,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

 □ 보증 신청 기한

* +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
    - 임대차 계약 신규 : “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” 이내
    - 임대차 계약 갱신 : “갱신 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(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” 이내
  + HF 전세자금보증
    - 임대차 계약 신규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    - 임대차 계약 갱신 :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(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),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  ※  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

**3. 대상주택**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
* 1. 임차 전용면적
  + 임차 전용면적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이하 주택(85㎡이하의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)  
    (단,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㎡ 이하)

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

* 2. 임차 보증금
  + 2억원 이하

**4. 대출한도**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* 1. 호당대출한도 8천만원
* 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  +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 또는 100% 이내
  +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% 이내 또는 100% 이내

※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,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3. 담보별 대출한도
  +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  +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※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5. 대출금리**

* 연 0%(5천만원 한도), 1.2% ~ 1.8%(5천만원 초과)

**6. 이용기간**

2년. 단,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(최장 10년 가능)

*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**7. 상환방법**

* 일시상환

**8. 담보취득**

* 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* 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(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 될 수 있음)

**9. 보증 종류별 안내**

**전세금안심대출보증 (HUG)**

* **내용**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+ 대출보증(특약) (분리 불가)
* **보증한도**:
  1. **목적물별 보증한도**
     + 주택가격 × 담보인정비율 – 선순위 채권 등
  2. **소요자금별 보증한도** (①, ②, ③ 중 작은 금액)
     + ① 전세보증금 이내
     +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% 이내
       -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: 100% 해당
       - 노후고시원 거주자·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: 100% 해당
       -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: 100% 해당
     + ③ 대출한도 금액
* **특징**: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
* **문의안내**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 또는 기금수탁은행

**전세자금보증 (HF)**

* **내용**: 대출보증 (\*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)
* **보증한도**:
  1. **보증종류별 보증한도**
     + 4억원 –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
  2. **소요자금별 보증한도** (①, ② 중 작은 금액)
     + ①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     +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
  3. **상환능력별 보증한도**
     + 연간인정소득 –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+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– 동일한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
* **특징**: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
* **문의안내**: 주택금융공사 콜센터(1688-8114) 또는 기금수탁은행

**10. 고객부담비용**

*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*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
**11. 대출금지급방식**

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
*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
**12. 대출취급영업점**

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
* 단, 특별시,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, 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,군까지 취급

**13. 중도상환수수료**

* 없음

**14. 대출계약 철회**

*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  + 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  + 2) 대출계약체결일
  + 3) 대출실행일
  + 4)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  + - 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
*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
**15. 유의사항**

*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*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
* 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*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 필요
*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(다만,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)
*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(점검 대상 : 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, 결혼예정 배우자,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
**16. 상담문의**

*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 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*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-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.

**[기한연장(민간)]**

**1. 대출 대상**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* 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
*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*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**2. 대출금리**

* 연 0%(5천만원 한도), 1.2~1.8%(5천만원 초과)

**3. 상환방법**

* 상환방법 변경불가

**4. 유의사항**

*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
*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

**5. 상담문의**

*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**[추가대출(민간)]**

**1. 대출대상**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* 1.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
  +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(전입일 기준)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
* 2. 임차보증금이 증액 (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)하는 경우

**2. 대출한도**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* 1. 호당대출한도
  + 8천만원 이하
* 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  +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% 이내
* 3. 담보별 대출한도
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추가대출 불가

**3. 유의사항**

*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

**4. 상담문의**

*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**[이용절차 및 제출서류(민간)]**

**1. 대출신청**

* (은행 방문 신청)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은행에서 가능

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**2. 이용절차**

1. **대출조건 확인:**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
2. **대출신청:** 은행방문신청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
3. **자산심사(HUG):**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
4. **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(HUG):**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
5. **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(수탁은행):**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
   소득심사, 담보물심사
6. **대출승인 및 실행:**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

*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[바로가기](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8/FP0813/FP081301.jsp))

**3. 준비 서류**

**《필수 서류》**

*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* 대상자확인 : 주민등록등본 등
* 주택관련 :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 등
* 기타확인 :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
  \*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
*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
**《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》**

* 대상자확인
  +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
  +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증명원
  +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*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  + (근로소득)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  + (사업소득) 사업자등록증
  +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* 주택관련 :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* 기타확인 :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 등

**4. 상담문의**

*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